

형사소송법 [08. 경찰1차] 기출

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추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단순추완에 속하나 상소 기간 만료 후 상소권 회복청구에 의해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속한다.
- ㉡ 추완은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 수 있다.
- ㉣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라 볼 수 없다.

4. 다음 중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형법상 범죄는?

- ㉠ 약취·유인죄 ㉡ 체포·감금죄
- ㉢ 상해죄 ㉣ 도주와 범인은닉죄
- ㉤ 미성년자간음죄 ㉥ 존속협박죄
- ㉦ 통화에 관한 죄 ㉧ 공갈죄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상의 즉시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가 어려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 고소에는 고소능력이 요구되는데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고소권을 갖는다.
- ㉣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만 따로 기소할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6. 피고인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 이다.
- ㉣ 공소제기 전 피의자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피고인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보석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사는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8.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를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 ㉣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나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9.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는? (판례에 의함)

- ㉠ 특수절도죄 → 장물운반죄
-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죄
- ㉣ 강도강간죄 → 강간죄
- ㉤ 살인죄 → 폭행치사죄
- ㉥ 특수강도죄 → 특수공갈죄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확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11. 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는 없다.
-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공소장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 할 수 없다.
-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검사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
- ㉡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조서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인정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 특신상태 증명이 필요하다.
- ㉣ 감정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1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다.
-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
-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있다.
- ㉣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 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하여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 ㉡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 ㉣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

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으로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 제1심판결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항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선고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 유죄판결과 항소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한 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은 효력이 없어진 것이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심대상이 아니다.
- ㉣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한다.
-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명령 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 할 수 없다

20. 미결구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 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 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 57조(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준용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즉시항고 기간 중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은 본형산입에 있어 제외된다.
- ㉢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병합심리 된 원판결의 일부만 파기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
- ㉣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이나 금고의 본형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08. 경찰1차 기출 답안 및 해설

- 정답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2조)
① 제8조 제1항 ② 대법원 2006. 12. 5. 2006초기335 쉰속
- 정답 ② ㉞이 틀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제201조의2 제8항 ㉡㉢ 제3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7조
- 정답 ④ 대법원 1969.10.4. 69도68
① 정식재판정구권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는 단순추완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추완이란 성립은 되었으나 부적법·무효인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불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 추완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1970.7.28. 70도942 참조.
- 정답 ③ 또는 ④.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문제는 미성년자간음죄가 제302조의 죄를 의미하는지 제305조의 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답은 ③이 되고, 후자를 의미한다면 정답은 ④이 된다. 제305조의 미성년자간음죄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정답 ③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9.2.9. 98도2074).
- 정답 ④ 모두 틀림.
①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제200조의5, 제209조, 제72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시 고지할 사항이다.(제200조 제2항, 규칙 제127조)
② 이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독립된 구속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③ 구속기간 갱신의 재판형식은 '결정'이다(제92조 제2항)
④ 산입하지 않는다. 형소법 제92조 제3항 참조.
- 정답 ① 보석허가결정과 보석청구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보통항고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② 제97조 ③ 규칙 제54조의2 제1항④제94조
- 정답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25. 2007모82)
① 대법원 2004. 3.23. 2003모126
② 제121조 ④ 대법원 1997. 9.29. 97모66
- 정답③ ㉞㉟의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다.
㉠ 대법원 1965. 1.26. 64도681
㉡ 대법원 1972. 5. 31. 70도1859
㉢ 대법원 1996. 6.28. 96도1232
㉣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6. 29. 2001도1091
㉥ 대법원 1968. 9.19. 68도995 쉰속
- 정답 ③④. 두 지문 모두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한다. **복수정답 처리가 옳다고 보여진다.**
③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결정의 확정성이 아님에 유의)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①)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 정답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 단서)
① 제271조 ②④ 제277조
- 정답 ② ㉞만이 옳다. 제30조 제2항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가일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제22조 제3항)
- 정답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은 그 요건이 아님(제312조 제6항)
- 정답 ③ ㉠㉡이 옳다.
㉠ 대법원 1998.12. 22. 98도2890
㉡ 대법원 2000.9.26.2000도2365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인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를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6.30.94도993)
㉣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공소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증거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민원사무처리부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9.28. 2001도4019)
- 정답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제249조 제1항 제6호)
② 제251조 ③대법원 2007. 3. 29. 2005도7032 ④ 대법원 1999. 3.9. 98도4621
- 정답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6.22. 82도409)
② 대판1982.9.28.82도1798
③ 대판1965.7.27, 65도473
- 정답 ①대법원 2004.11.11.2004도6784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④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
- 정답 ④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1997. 1. 16. 95모38)
① 대판1997.7.22.96도2153
③ 대판2004.2.13, 2003모464
- 정답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면소판결시에는 배상명령이 불가하다.
- 정답 ②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제482조 제3항)
① 대법원 2007.8.10, 2007도522
④ 대법원 1989.10.10, 89도1711